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

-법관인사제도-

2024. 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I. 대법원장 1차 부의 안건

- 1)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 2)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 3)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 4)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재편 및 유연화 방안

II. 안건별 개요

1.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가. 논의의 필요성

-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이 상향되어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됨**
- **우리의 사법현실과 법조경력요건의 재검토 필요성**
 - 합의부 구성 필요성
 - 국민들은 합의부 재판을 원하고 있고, 합의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고 충실한 판결서를 작성할 배석판사 자원 필요
 - 현재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처리 지연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사회변



화 등으로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 증가 추세

-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서는 충분한 배석판사 확보 불가

● 재판지연 심화 우려

- 기록 검토부터 판결서 작성까지 전적으로 혼자 수행하는 법관의 업무처리 방식, 과도한 법관의 업무량 등

- 7년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온 검사, 변호사 등이 배석판사로서의 훈련기간 없이 곧바로 법관업무 수행 시 사건처리 효율성 저하 우려

● 상고심 기능 약화 우려

-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만으로 법관 임용 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배치할 인력 부족

- 법관으로서 재판 및 판결서 작성에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판사가 재판 연구관으로 보임 시 조사연구의 효율성 저하 우려

● 법관 임용 어려움

- 법관에 대한 보수 수준과 지역순환근무 등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

- 7년 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경력을 포기하면서 법관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조경력자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

▣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와 법조경력요건의 적정성 검토

● 법조경력기간이 길다는 것이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추었다거나 법관으로서의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법조경력이 길어질수록 법관 임용 후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우려 커짐

- 법조경력 3년 또는 5년 정도 경험으로 재판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체험하는 등의 법관 이외의 법조실무 경험 충분히 축적 가능

●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선발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재판장에 의한 재판 가능

- 현행 예규에 따르면, 최소 4년 이상 배석판사 근무 필요하므로, 법조경력 9년 이후 단독재판장 가능
- 연령, 법조경력, 성별 등 법관 구성의 다양화 취지에 역행 우려
- 법조경력요건 상향 시 법관의 고령화 현상이 심해져 다양한 세대와 계층 아우르는 재판부 구성 어려움
- 법조경력요건을 상향할수록 여성의 법관지원율이 감소하는 경향 있음

나. 주요 쟁점

- 법관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 재검토 필요성 유무 검토
-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조경력요건의 적정성 검토
- 법조경력요건 적정화 방향 수립 및 구체적인 법률개정안 마련

2.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가. 논의의 필요성

- 법원장 후보 추천제(이하 '추천제')는 2019년에 처음 도입되어 시범실시를 거쳐 2023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음
-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에 관하여 소속 법관들의 의견개진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적 요소로 함
- 추천제의 실시 성과로는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 등이 거론되고 있는 반면, 이른바 인기투표 논란 등으로 과연 추천제가 책임자 보임 및 법원장의 적정한 사법행정권 행사를 통한 원활한 재판업무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선출제라는 지적도 있음
-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까지의 제도 운용 실태를 토대로 추천제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모색할 필요 있음

나. 주요 쟁점

▣ 추천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

▣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의 개선 방향 설정

- 법원장의 역할과 위상, 책임자 보임 원칙, 법관의 참여 여부, 절차적 정당성 또는 객관성 확보, 법체계적 정당성 등

▣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모색

- ① 법원장 보임 대상
- ② 적절한 법원장 보임 대상 기수 및 시기
- ③ 법원장 임기
- ④ 법원장 보임의 절차

다.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 추천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

- 제도 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

▣ 법원장 보임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법원장 보임 후보군/보임기수/임기/보임절차 등에 관한 개선방안 논의

▣ 그 밖에 주요 쟁점을 포함한 법원장 보임제도 개선 및 운영 방향에 관한 포괄적 논의

3.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가. 논의의 필요성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으로 고법판사 보임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고법판사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지방권 고등법원은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이원화 진행이 상당히 더딘 편으로 지방권 고등법원의 지원 유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고법판사의 중도 사직 현상과 관련하여 고법판사의 근무유인을 마련하여 고법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24년 정기인사로 수도권 고법판사의 지방권으로의 순환근무가 축소되고 신규보임 대상기수가 상향되었는데,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의 순환근무 전망과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고법판사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함

나. 주요 쟁점

- **고법판사의 신규보임 관련 개선방안**
 - 현행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최근 수도권 고법판사의 기수 상향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관련 개선방안**
 - 종래 순환근무 실시 현황 및 2024년 정책 변화 점검
 - 향후 순환근무 전망 및 검토방안
- **고법판사의 근무유인 관련 개선방안**



- 고법판사의 사직 및 지방권 고법판사의 지원 저조 원인 분석
- 근무의욕 고취 및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 방안 검토

다.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 현행 권역별 보임 및 근무 원칙의 유지 및 개선 여부
- 향후 고법판사의 순환근무 시행 범위
-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유인을 위한 다양한 방안
- 그 밖에 주요 쟁점을 포함한 고법판사 제도 운영 방향에 관한 포괄적 논의

4.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재편 및 유연화 방안

가. 논의의 필요성

-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법관 구성의 변화로 법관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종래의 인사패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최근 재판지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무분담 장기화 추세에 발맞춰 짚은 전보인사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잦은 인사이동은 재판업무의 효율성·연속성을 저해하여 사법신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법관 생활의 불안정은 중견 법관의 사직 원인이자 우수한 법조경력자 유치에 장애요소로 지목되기도 함
- 따라서 현행 법관 전보인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전보인사 주기를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및 유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법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



법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현행 법관 전보인사 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법관 전보인사 제도의 개선 방향 설정**
 - 업무의 효율성·연속성, 법관 생활의 안정, 법관 사이의 형평, 예측가능성 등 개선의 방향성 내지 주안점 설정
- **전보인사의 주기 개편 및 유연화 방안 연구, 검토**
 - 권역별로 순환근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
 - 사무분담기간을 고려하여 전보인사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안
 -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서울권 근무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다.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 **현행 법관 전보인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전보인사 제도 개선 방안별 장·단점 및 적절성**
- **그 밖에 주요 쟁점을 포함한 법관 전보인사 제도 개선에 관한 포괄적 논의**